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0가합52656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송시원, 전준오

피 고 1.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홍록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담당변호사 최영섭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C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 1) 서울특별시장은 2009. 12. 17. 서울 종로구 B 일대 10,413㎡에 대하여 C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종로구청장은 2010. 7. 2. C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인가하였다.
- 2) 이 사건 사업은 5차례1)에 걸쳐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2014. 7. 11.자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도로) 소유 및 매도

- 1) 종로구청장의 2014. 7. 11.자 사업시행(변경)인가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에 ①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종로구 D, E, F 합계 3필지를, ②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피고 종로구’라 한다)는 같은 구 G, H, I, J, K, L, M 합계 7필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 2) 원고는 2014. 12. 30.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종로구로부터 위 토지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하여 지칭할 경우 '○○동 ○○ 토지'라 한다)을 각 매수하였는데(이하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이 사건 각 토지	매도인	매매대금
1	D 도로 298.60㎡	피고 서울특별시	7,967,300,000원
2	E 도로 30.60㎡		
3	F 도로 0.90㎡		
4	G 도로 5.9㎡	피고 종로구	105,138,000원
5	H 도로 6.3㎡		113,935,500원
6	I 도로 2.6㎡		44,213,000원
7	J 도로 81.6㎡		1,773,576,000원
8	K 도로 51.8㎡		936,803,000원
9	L 도로 92.8㎡		2,017,008,000원
10	M 도로 3.8㎡		82,593,000원
		순번4 내지 10 합계	5,073,266,500원

라. 원고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준공인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1,644.3㎡, 공원 348.3㎡, 광장 520.6㎡, 공공공지 48.6㎡를 설치하였고, 종로구청장은 2018. 7. 30.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통해 도로로 설치되어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되어 오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더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게 되어 그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고, ②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97조 제3항 제4호는 소위 ‘현황도로’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토지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정비기반시설로써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만 합계 409억 원에 이르므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100,00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라고 볼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2)),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5. 2. 28.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로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나,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현황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다241072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등 참조).

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D, E 토지

(1) 갑 제5, 6, 7, 21, 26, 27, 29,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1984. 9. 17. S 토지에서 T 토지가 분할되었고, 1997. 2. 5. T에서 D, E 토지가 각 분할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에 의하면 S 토지에 대하여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 ② 서울특별시는 1966. 11. 26.

서울특별시 고시 U로 V(구 종로구 W)부터 X(구 종로구 Y)까지 구간을 'Z'로 지정한 사실, ③ 서울특별시가 1984. 10.경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선인정(변경, 폐지)을 하였는데, 'Z'의 기점이 기존 AA에서 AB으로 변경되며 도로가 50미터 연장되었고, 도로명도 기존 'Z'에서 'AC'로 변경된 사실, ④ 네이버지도에 D, E 토지가 'AC'라고 표시되어 있고, 항공사진상 1980년부터 위 토지들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T 토지대장에 의하면 1984. 10. 8.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되었다가 1988. 11. 4.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폐지되었으므로, T 토지가 구획정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T, D, E 토지의 경우 1984년에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1988년 구획정리 시행신고폐지한 지역에 포함된 토지이므로, D, E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 및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③ 서울특별시의 1966. 11. 26.자 서울특별시 고시 U는 지금까지 이름이 없던 주요가로(主要街路)에 가로명을 제정하여 고시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도로노선인정공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서울특별시는 1984. 10.경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선인정을 하였는데, 관련 내용을 보면 폭 30미터 길이 500미터의 'Z'를 폭 30미터, 길이 550미터의 'AC'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므로, 폭 30미터의 간선도로에서 벗어나는 D, E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D, E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F 토지

(1) 갑 제8,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AD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의 내용에 따르면 F 대지 44.7㎡가 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도로)의 명세에 포함된 사실, ② F의 토지대장에 1987. 1. 22. 구획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토지는 구획정리의 완료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갑 제2호증의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전체 면적 3,684.32㎡에 이르는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였고, 위

정비기반시설이 위치한 토지들의 공시지가 합계가 약 409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 토지 전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는 D, E, F 3필지의 매매대금을 합계 7,967,300,000원으로 정하였고, 위 3필지는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라는 점에서 필지별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21,722,417원(= 3필지 매매대금 7,967,300,000원 × 0.90㎡(F 도로) ÷ 330.1㎡(= D 토지 298.60㎡ + E 토지 30.60㎡ + F 토지 0.90㎡), 원 미만 버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위 21,722,41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성립하고 소멸시효 또한 그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인 2015. 2. 28.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이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한 2021. 3. 1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시점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 역시 준공인가 시점인 2018. 7. 30.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물건변동에 관한 규정일 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는 각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정하여진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D, E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4)의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F 토지는 위 규정상의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해당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종료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G 토지

(1) 갑 제9, 10, 23, 2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종로구에 대한 2020. 10. 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더하여 보면, ① 종로구가 1975. 12. 12. AE 도로 약 85.3평에 대한 신규등록을 한 사실, ② H 지번의 폐쇄지적(임야)도 등본에 의할 때 AF동 'AE도'를 삭선하고 그 아래에 수기로 'AG도'를 기재한 것이 존재하는 사실, ③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의 AD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에 따르면 AG 도로 99.8㎡가 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에 포함된 사실, ④ 1984. 9. 17. AG 토지에서 G 토지가 분할된 사실, ⑤ 1987. 1. 22. AG 토지가 구획정리되어 폐쇄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AG 토지에 대한 1983. 1. 10.자 구획정리 시행신고 이후 G 토지가 분할되고 이후 1987. 1. 22. AG 토지의 잔여 면적 99.8㎡에 대하여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므로, 구획정리 전에 분할된 G 토지 5.9㎡에 대하여는 구획정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종로구가 AG, G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노선인정공고가 없었다고 회신한 점, ③ 1975. 12. 12. AE 도로에 대한 신규등록이 있었는데, 신규등록은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나타낼 뿐 도로노선인정공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로 포함되었다고 하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넘어 도로노선인정공고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G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I, J 토지

(1) 갑 제13, 14, 15,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종로구에 대한 2020. 10. 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더하여 보면, ① 1984. 9. 17. AH 토지에서 I, J 토지가 각 분할된 사실, ② 종로구가 1975. 12. 12. AH 도로 113평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한 사실, ③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의 AD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에 의하면 AH 도로 66.9㎡가 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에 포함된 사실, ④ 서울시장의 1992. 1. 13.자 AI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의하면 J 도로 254.8㎡ 가운데 18.2㎡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에 포함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AH 토지는 1983. 1. 10.자 토지구획 시행신고 후 I, J 토지가 분할되고 난 이후인 1987. 1. 22. 잔여 면적 66.9㎡에 대하여 구획정리완료되어 폐쇄되었으므로, 구획정리 전에 분할된 I, J 토지에 대하여는 구획정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종로구가 AH, I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도로노선인정공고가 없었다고 회신하였고, J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인접한 AJ 노선에 대한 도로노선인정공고가 있었을 뿐 J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노선인정공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로 포함되었다고 하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넘어 도로노선인정공고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I, J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H, K 토지

(1) 갑 제11, 1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종로구에 대한 2020. 10. 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더하여 보면, ① 2010. 7. 30. H 토지에서 K 토지가 분할된 사실, ② 종로구가 1975. 12. 12. H 도로 34평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한 사실, ③ 서울시장의 1992. 1. 13.자 AI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의하면 H 토지 112.4㎡ 가운데 0.2㎡가 용도폐지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H 토지는 1991. 3. 18. 구획정리 시행신고되었다가 1992. 4. 18. 구획정리 시행신고폐지가 되었고 이후 K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구획정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AI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의하면 H 토지 112.4㎡ 가운데 용도폐지된 0.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그 이후에도 도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거나 도로로 사용되는 것만으로 도로노선인정공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신규등록은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나타낼 뿐 도로노선인정공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H, K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L, M 토지

(1) 갑 제16, 17,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0. 7. 30. L 토지에서 M 토지가 분할된 사실, ② 서울시장의 1992. 1. 13.자 AI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의하면 L 토지 1,058.0㎡ 가운데 0.2㎡가 용도폐지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L 토지에 대하여 1991. 3. 18.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되었으나 1992. 4. 18.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폐지됨으로써 L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AI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의하면 L 토지 1,058.0㎡ 가운데 용도폐지된 0.2㎡를 제외한 나머지 1,057.8㎡의 토지는 그 이후에도 도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도로로 사용되는 것만으로 도로노선인정공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종로구에 대한 2020. 10. 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할 때 L, M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노선인정공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L, M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종로구가 원고에게 매도한 G 외 6필지의 토지는 모두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종로구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소위 '현황도로'가 명문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 도시정비법은 2018. 2. 9.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개정 도시정비법 중 제97조 제3항 4호는 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부칙 제21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0. 7. 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3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원, 판사 정재우, 판사 이덕균

별지

관계 법령

■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①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

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67호,2017.2.8>

제21조(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종로구 고시 N, 종로구 고시 O, 종로구 고시 P, 종로구 고시 Q, 종로구 고시 R(을나 제7호증 참조)

2)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3)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1913. 6. 총훈 제33호, 폐지)에 의하면,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18개의 지목 중 1개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한 동을 단위로 한 필지마다 순차로 지번을 부여하나(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본문, 위 조사규정 제26조 본문),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인 토지에 대하여는 민유지에 속하는 것 외에는 지번을 부여하지 않고(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 조사규정 제26조 단서), 도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및 수도선로로서 민유의 신고 없는 토지와 하천·호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조사를 하지 않도록(위 조사규정 제17조) 규정하고 있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참조).

4)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이 적용된다.

5)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의 [붙임1] 도로노선인정공고 현황에 의할 때 L, M 토지는 연번 386, 387 도로에 인접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도로들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